다 기타 암

41 병원 임상병리사에서 발생한 대뇌교모세포종

성별 여성 나이 38.	직종	병원감염관리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2001년 9월부터 □병원 감염 관리실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보건직(임상병리사)으로 정규발령 받아 병원 내 감염관리 업무를 하였다. 근무하던 중 2012년 10월 두통 있어 병원 방문하여 정밀 검사 한 결과 대뇌 교모세포종(Glioblastoma cerebi)으로 진단 받고 수술적 처치 시행 받은 후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임상병리사로 병원 내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병원 환경 내 미생물 분리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와 원내 감염관리지침 등 각종 지침의 제작 및 배포 업무, 병원 내 감염관리 현장 모니터링 업무, 공사현장 감염관리 현황 모니터링 업무 등 감염관리실에서 수행중인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감염관리현장 모니터링 업무 수행시에는 영상의학계열 부서 모니터링 시 전리방사선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작업 모니터링이 차폐 벽밖에서 이루어지거나 방사선 발생 장비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간헐적작업으로 노출 시간 역시 길지는 않았다. 공사현장 감염관리 업무에서는 분진이나 접착제 등에 포함된 유기용제에 노출 될 수 있었으나 월 3~4회, 각 한 시간가량 노출되었기에 노출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유해광선_전리방사선)

5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9월 심계항진 등을 주소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에 두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어 수행한 뇌 컴퓨터단충촬영 결과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다. 2012년 12월 수술적 처지 시행 받은 뒤 대뇌교모세포종 진단받고 현재까지 재발 감시를 위한 추가 검사와 방사선 치료 및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며 요양 중에 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01년에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동 사업장에 보건직으로 정규발령 받고 원내감염관리와 원내외 공사현장 감염관리, 감염 지침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자기파의 경우 근거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직무특성상 전리방사선의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